## 大田直轄市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(案)

議案 番號 96 提出年月日: 1992. 2. 21

提出者: 大田直轄市長

### 1. 提案理由

財政을 計劃性 있게 運用하고,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"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"를 設置하여 運營하고자 함

### 2. 主要骨子

가. 委員會 構成(案第2條)

- (1) 委員長. 副委員長 各1人과 10~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
- (2)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며,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이 된다.
- (3) 委員은 關係 局・課長級 公務員, 地方議會議員, 専門分野教授등으로 構成하여 自治團體長이 委囑함
- (4)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1人을 두며 所屬公務員中에서 自治團體長이 任命함
- 나.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任務(案第3條)
  - (1) 委員長은 會議를 總括하고 委員會를 代表함
  - (2)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함
- 다. 委員會의 機能:地方財政計劃 樹立에 관한 諮問에 應합(案第4條)
  - (1)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관한 事項
  - (2) 財源調達에 관한 事項
  - (3) 投資事業 樹立에 관한 事項
  - (4) 其他 自治團體長이 附議하는 事項

### 라. 委員會 開催(案第5條)

- (1) 委員會는 定期會議 및 臨時會議로 區分 運營
- (2) 定期會議는 中期財政計劃 樹立時 開催하고 臨時會議는 必要時 隨時로 開催함.

### 마. 案 件 配 付(案第6條)

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은 會議開催 1週日前에 當該 委員에게 미리 送付하여 事前에 充分한 檢討가 이루어지도록 함. 다만, 不可避한 境遇 例外

### 바. 委員의 實費 辨償(案第9條)

委員會 開催時에는 委員에게 豫算의 範圍内에서 實費를 辨償할 수 있음

### 사. 委員의 任期(案第2條)

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必要時 連任할수 있음

- 아. 施 行 規 則(案第10條)
  -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함.

## 3. 根 據:地方財政法 第16條의 2(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)

- 가.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應 하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를 둔다.
- 나. 第1項의 地方財政計劃 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用에 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## 대전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 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, 부위원장1인 및 위원10~15인 이 내로 구성하다.
  -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.
  - ③위원은 대전직할시의 관계 국·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, 전문분야 교수등으로 구성하여 대전직할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- 1.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  - 3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- 4.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 -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

- 제5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 장이 요구하거나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 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
  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갖 는다.
- 제6조(안건배부등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 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.
- 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.
- 제8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수당) 시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"대전직할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 칙으로 정할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大田直轄市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

# 審査報告書

1992. 2. 29.

內 務 委 員 會

大田直轄市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

## 審査報告書

1992年 2月 29日 內務委員會

## I. 審 査 經 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案者: 1992年 2月 21日 大田直轄市長

나. 回 附 日 字:1992年2月22日

다. 上 程 日 字:第9回 大田直轄市議會(臨時會)

第1次 內務委員會 (1991年2月28日)

上程,審議,議決

## Ⅱ. 提案說明 要旨(提案說明者:企劃擔當官)

## 1. 提案理由

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用하고,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地方 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"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"를 設置하여 運營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子

### 가. 委員會 構成(案 第2條)

- (1) 委員長. 副委員長 各1人과 10~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
- (2)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며.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이 된다.
- (3) 委員은 關係 局・課長級 公務員、地方議會議員、専門分野教授 등으로 構成하여 自治團體長이 委囑함.
- (4)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며 所屬公務 員中에서 自治團體長이 任命함.

### 나.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任務(案 第 3條)

- (1) 委員長은 會議를 總括하고 委員會를 代表함.
- (2)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함.
- 다. 委員會의 機能: 地方財政計劃 樹立에 관한 諮問에 應함. (案 第 4條)
  - (1) 地方財政 運營方向에 관한 事項
  - (2) 財源調達에 관한 事項
  - (3) 投資事業 樹立에 관한 事項
  - (4) 其他 自治團體長이 附議하는 事項

## 라. 委員會 開催(案 第 5條)

- (1) 委員會는 定期會議 및 臨時會議로 區分 運營
- (2) 定期會議는 中期財政計劃 樹立時 開催하고 臨時會議는 必要時 隨時로 開催함.

마. 案 件 配 付(案 第 6條)

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은 會議開催 1週日前에 當該 委員에게 미리 送付하여 事前에 充分한 檢討가 이루어지도록 함, 다만, 不可避한 境遇 除外

바. 委員의 實費 辨償(案 第 9條)

委員會 開催時에는 委員에게 豫算의 範圍內에서 實費를 辨償할 수 있음

- 사. 委員의 任期(案 第 2條)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必要時 連任할수 있음.
- 아. 施行規則(案 第10條)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함.

## Ⅲ. 專門委員 檢討 要旨(專門委員:安鍾贊)

이 條例案은 地方財政法 第16條의 2의 規定에 의거 地方財政의 計劃性 있는 運用과 合理的인 財政 確保로 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

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設置 運營코자하는 事案으로서

○ 主要 內容을 살펴 보면 委員會 構成으로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 및 委員 10~15人 以內로 構成하는 案이 되겠으며,

ㅇ 主要 機能으로는 地方財政計劃 樹立에 관한 事項과 運營 方向, 財 源調達等 其他 自治 團體長이 附議하는 事項에 대한 諮問에 應하는 諮問機關이 되겠음.

地方化時代를 맞아 날로 增大되는 地方財政에 對하여 地域開發計劃 과 連繫한 地方財政 運營 計劃을 樹立 運營함에는 充分한 地域住民

의 意見 收斂과 專門家의 判斷等을 토대로 中長期 計劃을 樹立하여 야 하고 計劃性있는 財政 運營을 위하여는 各界에서 參與하는 諮問 機關이 절실히 要求되는 바 매우 바람직한 制度 마련으로 思料됨.

Ⅳ. 質疑 및 答辯 要旨: 없 음.

V. 討 論 要 旨:省 略

VI. 審 杳 結 果:原案 可決

Ⅷ. 體系 字句 整理 內容: 없 음

WⅢ. 其他 必要한 事項: 없 음.